



##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자 생활 수칙

### 제 1 조 (명칭)

본 수칙은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자 생활 수칙이라 칭한다.

### 제 2 조 (목적)

본 수칙은 생활관 구역 내의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단,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 3 조 (입주자의 의무)

- ① 입주자는 수칙 준수의 의무와 각자 호실 내의 도난 및 화재방지, 청결의 의무를 진다.
- ② 입주자는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대비훈련 교육 및 입주자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. 단, 불참 시 다음 학기 우선입주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### 제 4 조 (공용물 사용)

- ① 입주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및 손실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- ② 입주자는 허가 없이 생활관 내의 모든 기물 이동을 금한다.
- ③ 입주자는 배정된 방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호실 배정 변경을 요청한 경우 생활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④ 관 내에서는 모든 애완동물의 사육과 반입을 금한다.
- ⑤ 도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특수 장치를 설비한 비상문은 화재 및 기타 불의의 사고 시 대피로 역할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출입은 금한다.
- ⑥ 입주자는 퇴거일 이후에 호실 및 생활관 내 물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, 방치된 물품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 이로 인한 손실 및 망실은 본인이 책임진다.

### 제 5 조 (사용금지물품)

- ① 관 내에서는 휴게실에 비치된 조리 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.
- ② 관 내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, 스탠드 등 조명기기, 충전식 전기제품, 각종 충전기, 드라이기 등 의각 종 헤어용 가전제품, 가습기, 공기청정기, 선풍기, 소형 청소기, 모기 훈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.



- ③ 동조 2항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조리 및 발열을 목적으로 하는 가전제품, 전열기, 휴대용 가스 기구의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.
- ④ 동조 2항에서 정한 물품 외에 입주자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생활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⑤ 악기나 전자제품의 사용 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할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.

제 6 조 (인원점검 및 침묵시간)

- ① 각 방의 인원 점검은 매일 23:00~23:20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생활관 내에 있으면서 인원 점검을 받지 못한 자에 한하여, 24:00까지 해당 생활관 야간 행정실에 직접 확인한 경우 인원 점검을 인정한다.
- ② 침묵시간은 23:00 ~ 다음날 05:00로 한다.
- ③ 입주자는 침묵시간 중 생활관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. 단, 03:00~05:00는 외출을 제한한다.
- ④ 외출제한 시간 03:00~05:00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30분 내에 외출을 할 수 있다.
- ⑤ 침묵시간 중 생활관 내의 소란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생은 이를 소속 동장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, 소속 간사회 및 동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벌점 부과 및 지도할 수 있다.
- ⑥ 침묵시간 동안은 화장실, 휴게실, 복도 비상등과 개인용 스탠드를 제외한 모든 조명은 반드시 소등을 해야 한다.

제 7 조 (외박)

- ① 외박은 입주자가 교내·외 건물에서 활동하다가 다음날 03:00 이후에 귀관하는 것을 말하며, 신청자는 당일 인원점검에서 제외된다.
- ② 외박은 당일 23:00까지 외박신청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.
- ③ 연속 3일 이상 입실기록이 없을 시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제 8 조 (시설보증금)

- ① 입주자는 매 학기 및 방학 중에 입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일 만원(10,000원)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- 1. 무선공유기 및 매트리스 손망실
  - 2. 퇴거 시 방 청소 및 퇴거시간 준수 실행여부
- ② 퇴거 시 제7조 1항에 손망실이 없고, 2항 실행여부를 판단하여 자치회에서는 시설보증금을 환불해 준다.
- ③ 미 환불된 시설보증금은 자치회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.



제 9 조 (포상)

- ① 입주자는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,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인 경우 생활관장과 RC 집행부 및 간사회의 협의를 통해 RC 헤드마스터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 있다.
- ② 입주자는 상점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된다. 단, 벌점의 합계가 6점 이상인 경우 우선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③ 포상은 같은 내용으로 이중 수혜를 받지 못한다.
- ④ RC 집행부는 소속 RC 간사회와 협의하고 헤드마스터 승인을 얻어 소속 RC 특색에 맞는 상점항목을 추가 제정할 수 있다.
- ⑤ 상점 기준은 별지의 <상점제도> 표를 따른다. 단, 표에 있지 않는 내용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.

<상점 제도>

내 용	예 시	상점
입주자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	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	3~5
입주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	분실물 습득, 불편한 학우 도움 등 생활관 내 공동체성 함양에 이바지한 각종 선행	1~2
공용시설 위생과 청결에 기여하는 행위	공공기물 고장 신고 및 청결 유지 등 시설 관리에 꾸준한 기여, 시설 및 운영개선 제안 등	1~3
학생생활관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	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	1~5

제 10 조 (벌점부여 및 이의 신청)

- ① 입주자는 지침이나 생활 수칙을 위반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RC 집행부, 간사회, RC 헤드마스터, 생활관장으로부터 벌점을 부과 받는다.
- ② 벌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자는 강제 퇴거 되며, 다음 등록학기 입주가 제한된다. 단일 항목 벌점 퇴거자는 방학을 포함한 다음 등록학기 입주가 제한된다. 생활관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③ 벌점 부과를 받은 자는 처분 5일 이내에 거주 호관 담당 간사 또는 소속RC 동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④ RC 집행부는 소속 RC 간사회와 협의하고 헤드마스터 승인을 얻어 소속 RC 특색에 맞는 벌점항목을 추가 제정할 수 있다.
- ⑤ 벌점 기준은 별지의 <벌점제도> 표를 따른다. 단, 표에 있지 않는 내용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.

<벌점제도>

번호	내 용	벌 점
1	절도, 폭행, 방화, 도박, 성추행, 성폭행 등의 위법 행위	퇴거
2	생활관 구역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한 경우 (전자담배 포함)	
3	남녀 숙소의 무단 방문 및 허용 또는 혼숙(생활관 운영수칙 제13조 1항 준용)	
4	생활관 건물 내로 주류를 반입 또는 음용한 경우	
5	23:00 이후에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킨 행위	다음 학기 입주 제한
6	23:00 이후에 타동 입주자를 무단으로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킨 행위	5
7	고의적인 시설물 손괴 행위	5
8	지정된 출입구 이외의 통로로 출입하는 행위	5
9	소란 및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	3
10	침묵시간 내 01:00 이후 야식 반입	3
11	사내 시설물 및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(잠금장치 부착, 못질, 낙서, 스티커 부착 등)	2
12	03:00~05:00 외출제한시간 내 외출하는 경우	2
13	무단외박을 하는 경우 (외박을 작성하지 않고 03:00 이후에 들어오는 행위)	1
14	잠시 외출 후 30분 내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	1
15	벌점제도와 관련된 지도 불이행	1~3
16	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(호실 임의 변경 및 허가 받지 않은 공간 임의 사용 등)	1~10

제11조 (수칙의 개정)

- ① 수칙 개정은 입주생들의 의견 수렴 후 간사회와 자치회가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한다.
- ② 발의된 개정안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되고 개정된 수칙은 7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12조 (기타)

본 수칙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생활관 실무위원회에서 가진다.

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위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